

검 토 보 고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3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재난관리법('97. 8. 30) 및 동법시행령('98. 2. 24)의 개정으로 인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재원은 시의 적립금(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이상), 기금의 운용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.(안제2조)
-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·관리하도록 함.(안제3조)
-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, 보수·보강, 임대 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한하도록 제한함.(안제4조)

○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지정함.(안제5조)

○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○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기금의 조성재원을 시의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·기타 수입금으로 하고, 사용용도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과 임대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제한하며,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근거법규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○ 다만, 기금의 용도중 안제4조 제1항 제2호에 “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단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